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후)

주식회사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을"의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의 업무내용)

본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가상계좌의 사용 용도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단독 이용
(Virtual Account Service Only)
- RMS (Receivables Management System, 미수금관리시스템)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Virtual Account Service linked with RMS Service)
-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2. 업무의 범위

- 본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의 범위는 "갑"의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갑"의 거래처별로 할당된 고유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갑"이 사전에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자금이체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로 한다.
- RMS (미수금관리시스템)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갑"의 거래처별로 할당된 고유 가상계좌는, RMS (미수금관리시스템) 에서 고객의 미수금거래내역과 입금 내역간의 대사작업을 위한 지급인 아이디(Payor ID)로 사용된다.

제 3 조 (가상계좌의 신청)

1. "갑"은 "을"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갑"의 거래처에게 교부할 고유 가상계좌 좌수를 아래와 같이 신청한다.

업무내용	신청좌수
가상계좌번호 부여	총 좌

2. "갑"은 "을"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모계좌인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예금과목	계좌번호	예금주
1. <input type="checkbox"/> 보통예금		
2. <input type="checkbox"/> 당좌예금		

3. "갑"은 "을"에게서 부여 받은 일련의 가상계좌에 고객정보를 첨부하여 "을"에게 처리 의뢰할 수 있고, 해당 파일은 전자메일, 컴퓨터 디스크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 등과

같이 전자적장치를 통해 전자문서로서 송부할 수 있다. 그러한 파일은 송부 전에 반드시 암호화 처리를 거쳐야만 하고 “갑”은 “갑”이 작성한 파일의 진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4 조 (업무 처리 및 자금정산방법)

1. 업무처리 시간은 “을”의 대고객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을”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갑”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갑”의 고객 예금 인출 또는 이체의 청구 절차 없이 “갑”이 본 계약서에 의해 지정한 모계좌로 바로 이체된다. 다만 “을”의 시스템 사정, 경영 정책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동 이체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3.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 수표가 추심완료 된 후에 출금가능하다.
4. “을”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별도의 예금청구절차 없이 “갑”의 해당 모계좌에서 출금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입금업무 처리의 예외)

“을”이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에게 전문 통보 후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1.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거래 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
2. 가상계좌나 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제 6 조 (거래 내용의 확인)

1. “갑”과 “을”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 확인사항 중 “을”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 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갑”에게 별도 통지한다.

제 7 조 (수수료)

1. 가상계좌 발행 수수료는 가상계좌 신청 좌수에 따라 매 발급시 일회 납부한다.
2. 가상계좌 월정 수수료는 가상계좌의 누적 발급 좌수에 따라 부과 되며, 해당월에 신규 발급된 좌수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3. 가상계좌 거래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모계좌로 입금처리된 거래 건수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4.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첫번째 영업일에 “갑”이 지정한 아래 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절차 없이 자동 인출된다.

예금과목	계좌번호	예금주

5. 상기 수수료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6.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을”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갑”은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시행일 전까지 이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 (효력 및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을”이 “갑”에 대하여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 날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 9 조 (계약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1.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
 - 1-2.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3. 계약상대방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제 1-1 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제1-2항 및 제1-3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항의 경우에 “갑”은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 전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요청이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0 조 (전산운용)

제2조에 따른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갑”과 “을”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면책)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다만, “갑”이 요청하는 경우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 13 조 (준용사항)

본 가상계좌 자금관리 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모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을”의 예금업무관련 약관을 준용하며, “을”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 환 공동망(CD공동망 및 전자금융공동망 포함)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만약, 본 계약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먼저 적용한다.

제 14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XXXX년 XX월 XX일

(갑)
XXXX 주식회사

(을)
홍콩상하이 은행 서울지점

_____ (인)

_____ (인)